

「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5. 16. 개정 판 (시행 2022. 5. 1.) → 2024. 9. 30. 개정 판 (시행 2024. 9. 1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05/compare?from=1340&to=1559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7:25:30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 프로그램 관리·운영한다. 또한,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〈개정 2013-02-25〉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(영문명: Center for Teaching & Learning, 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13-02-25〉
제4조(조직) (조직) 센터는 교수지원팀과 학습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·운영한다. 또한,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 〈전면개정 2019-05-13〉	제4조(조직)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·운영한다. 또한,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 〈전면개정 2019-05-13〉〈개정 2024-09-30〉
제5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〈개정 2019-05-13〉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(위원장), 교수학습개발센터장(서기), 교무부처장, 스미스학부대학장, 글로벌사회혁신원장, 대학일자리본부장, 취업진로지원센터장, 교수(2)로 구성한다.〈개정 2019-05-13〉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〈개정 2019-05-13〉 〈전문개정 2013-02-25〉	제5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〈개정 2019-05-13〉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(위원장), 교수학습개발센터장(서기), 교무부처장, 스미스학부대학장, 글로벌사회혁신원장, 대학일자리본부장, 취업진로지원센터장, 교수(2)로 구성한다.〈개정 2019-05-13〉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〈개정 2019-05-13〉 〈전문개정 2013-02-25〉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(영문명: Center for Teaching & Learning, 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조직) 센터는 교수개발지원팀과 학습개발지원팀으로 나누어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리·운영한다. 또한,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교수학습운영위원회(이하”를 “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(이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